

“물류산업의 선도적 역할”

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

위상강화
상생발전
가치상승

수신 각회원

(경유)

제목 2023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 추가 및 교육 변경 안내

1.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교연 23-84호(2023.5.9.)와 관련입니다.
3.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「2023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추가 확정 및 교육장 변경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진 바, 각 회원님께서서는 보수교육 미 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·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교육장 추가확정

| 지역 | 교육장 | 업종 | 교육일정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리 | 구리시청소년수련관 | 혼합(여객/화물) | 6월 19일(오전), 6월 20일(오전) |
| 하남 | 하남시청별관대강당 | 혼합(여객/화물) | 10월 5일(오전), 10월 6일(오전) |
| 이천 | 이천아트홀소공연장 | 혼합(여객/화물) | 10월 12일(오전), 10월 13일(오전) |

나. 교육장 변경

| 교육일정 | 지역 | 변경전 | 변경후 | 비고 |
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7월24일~26일 | 포천 | 포천반월아트홀 (포천시 군내면 청성로111) | 포천 여성회관 청성홀 (포천시 군내면 청성로112) | 포천반월아트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휴관 |

- 붙임 1. 2023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(집합·온라인)
2. 운수종사자(보수)교육 관련 행정처분 1부. 끝.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이사장 전 재



시행 경기화협 제 302 호('23. 5. 15.)

민원 핫-라인 (031)245-5220

우 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(송죽동) 4층 / www.kgta.or.kr.

전화번호 (031)243-5221, 2. 팩스번호 (031)251-9770

kgta5221@naver.com

2023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(집합·온라인)

보수교육

◦ 교육대상 :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(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제외)

| | |
|------------|---|
| 교육 면제대상 | *화물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는 면제 *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·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는 교육 면제 |
|------------|---|

◦ 교육예약 :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

◦ 교육형태 : 대면[집합]교육

| 번호 | 지역 | 교육장 | 교육일정 |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| | | 확정 | 일정 |
| 1 | 고양(2회) | 어울림누리 | 확정 | 오전 5월 16일 ~ 17일 |
| 2 | 구리(2회) | 구리시청소년수련관 | 확정 | 오전 6월 19일 ~ 20일 |
| 3 | 광주(2회) | 시청대강당 | 확정 | 오전 7월 8일 ~ 9일 |
| 4 | 김포(3회) | 통진두레문화센터 (대강당) | 확정 | 오전 6월 13일 ~ 15일 |
| 5 | 동두천(2회) | 시민회관 | 확정 | 오전 5월 23일 ~ 24일 |
| 6 | 부천(4회) | 시청어울마당 (대강당) | 확정 | 오전 7월 12일, 7월 20일 ~ 21일, 9월 4일 |
| 7 | 성남(2회) | 시청 (은누리실) | 확정 | 오전 9월 13일 ~ 14일 |
| 8 | 시흥(3회) | 정왕평생학습관 | 확정 | 오전 6월 26일 ~ 28일 |
| 9 | 안산(5회) | 올림픽기념관 | 확정 | 오전 9월 18일 ~ 19일 |
| 10 | 안양(2회) | 안양시청 | 확정 | 오전 9월 11일 ~ 12일 |
| 11 | 양주(2회) | 문화예술회관 (소강당) | 확정 | 오전 10월 16일 ~ 17일 |
| 12 | 여주(2회) | 세종국악당홀 | 확정 | 오전 8월 28일 ~ 29일 |
| 13 | 용인(1회) | 시청에이스홀 | 확정 | 오전 10월 10일 |
| 14 | 의정부(3회) | 신한대학교 세미나실 | 확정 | 오전 7월 17일 ~ 19일 |
| 15 | 이천(2회) | 이천아트홀소공연장 | 확정 | 오전 10월 12일 ~ 13일 |
| 16 | 포천(3회) | 반월아트홀 (대강당) | 확정 | 오전 7월 24일 ~ 26일 |
| 17 | 하남(2회) | 하남시청별관대강당 | 확정 | 오전 10월 5일 ~ 6일 |
| 18 | 수원 | 경기도 교통연수원 | 확정 | 보수일반 【화물平日】 5월(26)일/ 6월(12,19)일/ 7월(3,17)일/ 9월11일/ 10월(12,16,23,30)일 【화물주말】 5월(21)일/ 6월(3,17,25)일/ 7월(2,9,16)일/ 8월(19,20,27)일/ 9월(3,9,17,24)일/ 10월(21,29)일 |

◦ 교육형태 : 온라인 동영상(VOD) 교육

| | |
|------|--|
| 교육시간 | 4시간 |
| 교육예약 | 홈페이지내에서 교육예약 |
| 교육일정 | 6월 2일 ~ 10월 24일 |
| 교육방법 | - 스마트기기(pc 및 모바일)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- 5일 이내 4시간 동영상(VOD) 교육 수강 완료 |

- 예약은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(본인실명인증, 본인인증으로)
올해 교육 접수는 본인 실명인증 후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.
- 교육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실시간으로 예약취소 및 마감 등 변동사항 발생 가능
- 유튜브 경기도교통연수원 채널에서 동영상(VOD)접수방법 안내
화물업종 유튜브 예약 방법 링크 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Ky_01J0X88Y)

위험물교육

- 교육대상 :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**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**
※ 단말기장치장착 : 위험물, 지정폐기물, 유해화학물질, 고압가스 차량

| | |
|------------|---|
| 교육 면제대상 | *화물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는 면제 *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·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는 교육 면제 *(보수교육 면제) 위험물 운전자교육 8시간 이수자는 당해 연도 4시간의 보수교육 면제 |
|------------|---|

- 교육형태 : 대면[집합]교육
- 교육장소 : 경기도교통연수원(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191번길 6)
- 교육시간 : 09:00 ~ 18:00 (휴식시간1시간 포함)
- 교육예약 :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

| 교육장 | 교육일 | 교육시간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경기도교통연수원(수원) | 7월 23일(일) | 09:00 ~ 18:00 | 휴식시간 1시간포함 |
| | 10월 14일(토) | 09:00 ~ 18:00 | |
| | 12월 11일(월) | 09:00 ~ 18:00 | |

운수종사자(보수)교육 관련 행정처분
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[별표 1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10호서목

2. 개별기준

| 위 반 행 위 | 근 거 법 조 문 | 처 분 기 준 |
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0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| 법 제19조제1항제7호 | ○사업 일부정지(10일) |

[별표 2]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(제7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3호머목, 제2호의 제17호차목, 제2호 비고 제1호

2. 개별기준

| 위 반 행 위 | 근 거 법 조 문 | 과 징 금 의 금 액 |
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3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머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| 법 제19조제1항제7호 | 30만원 |

※ 비고

- 위 표 제3호머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.
(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×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)

[별표 5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

2. 개별기준

| 위 반 행 위 | 근 거 법 조 문 | 과 태 료 금 액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아.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(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,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70조제2항제5호 | 50만원 |
| 보.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|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| 50만원 |